



Governance Issue

10대 그룹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등재 현황과 시사점

20210601

김남은 팀장

nameun.kim@daishin.com

1. 주요내용

- 상위 10대 그룹 소속의 상장기업은 총 106개社였으며, 총수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9개社(8.5%)에 불과함
-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14개社(13.2%)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아 주요 의사결정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유리한 '미등기' 임원임에도 '등기' 임원으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전문경영인 보다 월등한 보수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어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2. 시사점

I. '책임경영' 측면에서 총수의 '등기' 임원 등재 필요

- 그룹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수 및 총수일가의 상당수는 '미등기' 임원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며 '등기' 임원인 전문경영인(대표이사)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음
- '책임경영'을 위해 총수가 '등기' 임원으로 등재되는 것이 필요

II. 총수일가 보수 내역은 '5억 이상 상위 5인 공개 규정'에 제한 없이 공개

- 총수일가의 개인별 보수가 '5억 이상 상위 5인' 범위를 벗어날 경우, 보수 내역 확인 불가
- '총수일가'의 범위를 정하고, 총수일가의 보수는 모두 공개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필요

III. <사업보고서> 내 총수일가를 구분하는 용어 통일

- 현행 사업보고서 공시작성기준으로 총수일가의 판단 어려움
- 총수일가를 구분할 수 있는 통일된 용어와 서식을 도입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필요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5월, 2021년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71개(소속회사: 2,612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그룹)으로 지정·통지하였으며, 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이하, 총수)을 발표하였다.

총수의 '등기' 임원 등재 여부는 '책임경영'의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당 연구소는 총수가 있는 그룹 중 상위 1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106개社) 내 총수 및 총수일가의 '등기' 임원 '미등기' 임원 등재 현황과 '미등기' 임원인 총수일가의 보수 내역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편,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이며, '등기'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과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총수 및 총수일가의 등기 여부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여부, 즉 '책임경영'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10대 그룹 소속 총수일가의 임원 등재 현황

10대 그룹 상장기업: 106개社
총수가 '등기' 임원: 9개社
총수가 '미등기' 임원: 14개社

상위 10대 그룹 소속의 상장기업은 총 106개社였으며, 총수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9개社(8.5% 비중)에 불과하였다. 반면,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14개社(13.2% 비중)로 조사되어 해당 기업(14개社, 13.2%)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아 주요 의사결정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 106개社 중 83개社(78.3% 비중)는 총수가 직책이 없음에도 총수의 실질적 지배력 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1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 총수일가의 임원 등재 현황

그룹명	상장기업	총수 본인 ^{주1)}				총수일가(총수 포함) ^{주2)}	
		성명	'등기' 임원	'미등기' 임원	직책 없음	등기	미등기
삼성	16개社	이재용	-	1개社	15개社	1개社	1개社
현대자동차	12개社	정의선	3개社	-	9개社	6개社	1개社
SK	20개社	최태원	1개社	2개社	17개社	5개社	6개社
LG	13개社	구광모	1개社	-	12개社	-	-
롯데	10개社	신동빈	3개社	2개社	5개社	3개社	2개社
한화	7개社	김승연	-	2개社 ^{주3)}	5개社	1개社	3개社
GS	7개社	허창수	1개社	-	6개社	4개社	3개社
현대중공업	6개社	정몽준	-	-	6개社	-	1개社
신세계	7개社	이명희	-	2개社	5개社	-	3개社 ^{주4)}
CJ	8개社	이재현	-	5개社	3개社	2개社	5개社
10대 그룹	106개社 (100%)	10명	9개社 (8.5%)	14개社 (13.2%)	83개社 (78.3%)	22개社	25개社

자료: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사업보고서(2020.12), 분기보고서(2021.03)

주1) 총수 및 총수일가의 임원 등재 현황은 2020년 말 기준

주2) 총수의 친인척 중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총수의 배우자 등

주3)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2021년 2월 취업제한이 종료되어 회장('미등기' 임원)으로 복귀하여 위 통계에 포함

주4)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문성욱 부사장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사위로 위 통계에 포함

물론, 사내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무분별한 겸직을 지양할 필요가 있지만, 대규모 내부거래, 대규모 지분투자 및 시설투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수가 '등기' 임원으로 등재 되지 않는다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미흡한 한국의 경영환경과 총수가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총수가 '등기'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총수의
'등기' 임원 등재 비율 추세:
2015년 이후 감소 추세

10대 그룹의 현상을 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비상장기업까지 확대하여 살펴보면 그 현상은 두드러지며, 추세를 볼 때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총수의 '등기' 임원 등재 비율은 2018년도에 0.3% 소폭 상승한 점을 제외하고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권한과 보수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총수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한 결과로 판단되며,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최근 5년간 연속 분석 대상 (동일 21개 집단) 이사 등재 회사 비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수본인	5.2%	5.1%	5.4%	4.7%	3.9%
총수일가	17.8%	17.3%	15.8%	14.3%	13.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2020.12.09)

10대 그룹 소속 '미등기' 임원인 총수일가의 보수 현황

10대 그룹 '미등기' 총수일가의
보수 현황: 전문경영인 상회

총수 및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등재는 책임회피 측면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수 수령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당 연구소가 10대 그룹의 상장기업 106개사의 총수일가의 보수를 전문경영인과 비교한 결과,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유리한 '미등기' 임원임에도 '등기' 임원으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전문경영인보다 월등한 보수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어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10대 그룹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보고서> 공시 중 '임원의 보수 현황'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장 제2절>에 의거하여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에서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있어 범위를 벗어나는 총수일가의 보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1) 삼성, LG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무보수)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수년째 무보수 경영중이며, 이는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하며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재용 회장의 무보수 경영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타그룹 사례에 비해 돋보인다.

LG그룹: '미등기' 사례 없음

LG그룹은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광모 회장이 '등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은 LG(지주사) 1곳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그룹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인 LG(지주사)의 '등기' 임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표3. 1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 미등기 총수일가의 보수 현황 (삼성, LG)

그룹명	기업명	총수일가(총수 포함) ^{주1)}				전문경영인 ^{주2)}		보수배수 (총수일가/전문경영인)
		성명	직책	등기여부	보수(백만원)	성명	보수(백만원)	
삼성	삼성전자	이재용 ^{주3)}	부회장	미등기	무보수	김기남	8,274	-
	소계	1석			무보수			
LG	사례 없음			사례 없음		-		-

자료: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사업보고서(2020.12)

주1) 총수의 친인척 중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총수의 배우자 등

주2) 총수일가, 고문 등을 제외한 등기임원 중 보수총액이 가장 높은 임원

주3) 총수 본인

주4) 총수 및 총수일가의 보수 현황은 2020년 기준

2)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현대차그룹: 정문선 부사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문선 부사장은 '미등기' 임원으로서 9억의 보수를 받아 총수일가 외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유호중 상임고문(2020.09.30 퇴임)보다 1.7배 많은 보수를 받았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과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은 그룹 총수로서 그룹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미등기' 임원(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심지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강희태 대표이사의 보수보다 1.5배의 보수를 받았으며, 롯데칠성음료의 이영구 대표이사보다 1.9배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그룹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은 2014년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적용된 취업제한이 2021년 2월 종료됨에 따라 한화(지주사)와 한화솔루션에 '미등기' 임원(회장)으로 복귀하여 올해 보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김승연 회장, 김동관 사장, 김동원 상무	
현대중공업그룹: 정기선 부사장	한화그룹의 김동관 사장과 현대중공업그룹의 정기선 전무는 <사업보고서> 내 '임원의 보수 현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장 제2절>에 의거,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에서 상위 5명의 범위를 벗어나 보수 내역 확인이 불가하였다.

표4. 1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 미등기 총수일가의 보수 현황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

그룹명	기업명	총수일가(총수 포함) ^{주1)}				전문경영인 ^{주2)}		보수배수 (총수일가/전문경영인)
		성명	직책	등기여부	보수(백만원)	성명	보수(백만원)	
현대자동차	현대비앤지스틸	정문선	부사장	미등기	901	유흥중 ^{주6)}	535	1.7배
	소계	1건			901			
롯데	롯데쇼핑	신동빈 ^{주3)}	회장	미등기	1,313	강희태	894	1.5배
	롯데칠성음료	신동빈 ^{주3)}	회장	미등기	1,000	이영구	529	1.9배
	소계	2건			2,313			
한화	한화	김승연 ^{주3)}	회장	미등기	없음 ^{주5)}	이민석	1,940	-
		김동관	사장	미등기	미공개 ^{주4)}			-
	한화생명	김동원	상무	미등기	601	여승주	800	0.8배
	한화솔루션	김승연 ^{주3)}	회장	미등기	없음 ^{주5)}	김희철	584	-
	소계	4건			601+α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정기선	부사장	미등기	미공개 ^{주4)}	권오갑	정보없음 ^{주4)}	-
	소계	1건			미공개 ^{주4)}			

자료: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사업보고서(2020.12)

주1) 총수의 친인척 중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총수의 배우자 및

주2) 총수일가, 고문 등을 제외한 등기임원 중 보수총액이 가장 높은 임원

주3) 총수 본인

주4)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현황은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을 공개하고 있어 해당 인원의 정보가 없음

주5)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2021년 2월 취업제한이 종료되어 회장('미등기' 임원)으로 복귀하여 위 통계에 포함

주6) 공개된 개인별보수지급금액 중 총수일가 제외시 유흥중 상임고문(미등기, 2020.09.30 퇴임)이 유일하여 위 통계에 포함

주7) 총수 및 총수일가의 보수 현황은 2020년 기준

3) SK, GS

SK그룹	SK그룹과 , GS그룹은 총수의 친·인척간 지분이 분산되어있고, 친·인척의 경영 참여가 활발하여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인 사례가 다수(SK그룹 8건, GS그룹 4건) 발견되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SK하이닉스에서 이석희 대표이사의 1.2배 보수를 받았고, SK이노베이션에선 최태원 회장의 보수를 확인할 수 없으나 김준 대표이사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부회장, 최성환 임원	
GS그룹	GS그룹의 허윤홍 사장은 GS건설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등기' 임원인 임병용 부회장의 0.5배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허승조 부회장, 허윤홍 사장, 허서홍 이사 허치홍 상무보	한편, 아쉬운 점은 다수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다수(SK그룹 6건, GS그룹 3건)가 '미등기' 임원인 총수일가의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에서 상위 5명의 범위를 벗어나 보수 내역 확인이 불가하였다.

표5. 1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 미등기 총수일가의 보수 현황 (SK, GS)

그룹명	기업명	총수일가(총수 포함) ^{주1)}				전문경영인 ^{주2)}		보수배수 (총수일가/전문경영인)
		성명	직책	등기여부	보수(백만원)	성명	보수(백만원)	
SK	SK	최재원	수석부회장	미등기	미공개 ^{주4)}	장동현	4,699	-
		최성환	임원	미등기	미공개 ^{주4)}			-
	SK텔레콤	최창원	부회장	미등기	미공개 ^{주4)}	박정호	7,380	-
	SK하이닉스	최태원 ^{주3)}	회장	미등기	3,000	이석희	2,427	1.2배
	SK이노베이션	최태원 ^{주3)}	회장	미등기	미공개 ^{주4)}	김준	2,977	-
	SK디엔디	최창원	부회장	미등기	1,464	함스테판윤성	1,420	1.0배
	SK네트웍스	최성환	임원	미등기	미공개 ^{주4)}	박상규	1,283	-
		최재원	임원	미등기	미공개 ^{주4)}			-
		소계	8건			4,464+α		
GS	GS	허서홍	이사	미등기	미공개 ^{주4)}	홍순기	1,089	-
	GS리테일	허승조	부회장	미등기	미공개 ^{주4)}	조윤성	934	-
		허치홍	상무보	미등기	미공개 ^{주4)}			-
	GS건설	허윤홍	사장	미등기	1,039	임병용	2,093	0.5배
		소계	4건			1,039+α		

자료: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사업보고서(2020.12)

주1) 총수일가는 총수의 친인척 중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총수의 배우자 限

주2) 총수일가, 고문 등을 제외한 등기임원 중 보수총액이 가장 높은 임원

주3) 총수 본인

주4)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현황은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을 공개하고 있어 해당 인원의 정보가 없음

주5) 총수 및 총수일가의 보수 현황은 2020년 기준

4) 신세계

신세계그룹은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중인 사례가 다수 발견(7건)되었음에도 총수 본인이 '등기' 임원으로 재직중인 사례가 없어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신세계그룹

: 이명희 회장, 정재은 명예회장,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총괄사장,

문성욱 부사장

신세계그룹의 총수일가는 모두 '미등기' 임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총수인 이명희 회장을 비롯하여 이명희 회장의 배우자인 정재은 명예회장은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각각 39억5천4백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이명희 회장의 두 자녀인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은 각각 33억6천8백만원, 29억6천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이명희 회장의 사위인 문성욱 부사장은 8억8천8백만원을 받아 '미등기' 임원인 총수일가가 그룹으로부터 받은 총 보수는 151억2천4백만원에 이른다.

특히 '미등기' 임원인 정유경 총괄사장이 신세계로부터 받은 보수는 '등기' 임원인 차정호 대표이사가 받은 보수의 2배가 넘었고, '미등기' 임원인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로부터 받은 보수는 '등기' 임원인 강희석 대표이사가 받은 보수의 1.6배에 달하여 '책임경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6. 1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 미등기 총수일가의 보수 현황 (신세계)

그룹명	기업명	총수일가(총수 포함) ^{주1)}				전문경영인 ^{주2)}		보수배수 (총수일가/전문경영인)
		성명	직책	등기여부	보수(백만원)	성명	보수(백만원)	
신세계	신세계	정재은	명예회장	미등기	1,261	차정호	1,384	0.9배
		이명희 ^{주3)}	회장	미등기	1,261			0.9배
		정유경	총괄사장	미등기	2,960			2.1배
	이마트	정재은	명예회장	미등기	2,693	강희석	2,092	1.3배
		이명희 ^{주3)}	회장	미등기	2,693			1.3배
		정용진	부회장	미등기	3,368			1.6배
	신세계인터내셔널	문성욱 ^{주4)}	부사장	미등기	888	장재영	1,718	0.5배
	소계	7건			15,124			

자료: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사업보고서(2020.12)

주1) 총수일가는 총수의 친인척 중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총수의 배우자

주2) 총수일가, 고문 등을 제외한 등기임원 중 보수총액이 가장 높은 임원

주3) 총수 본인

주4)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문성욱 부사장은 이명희 회장의 사위로 위 통계에 포함

주5) 총수 및 총수일가의 보수 현황은 2020년 기준

5) CJ

CJ그룹은 10대 그룹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중인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17건)되었음에도 총수 본인이 '등기' 임원으로 재직중인 사례가 없어 권한과 책임의 일원화 관점에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J그룹

: 이재현 회장, 이미경 부회장

김희재 부사장, 이경후 부사장,

정종환 부사장대우

CJ그룹은 총수인 이재현 회장을 비롯하여 이재현 회장과 남매지간인 이미경 부회장, 이재현 회장의 자녀인 이경후 부사장과 그 배우자인 정종환 부사장대우가 '미등기' 임원이며, 심지어 이재현 회장의 배우자인 김희재 부사장까지 '미등기' 임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 연구소가 10대 그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수의 배우자가 그룹 내 '미등기' 임원으로 조사된 것은 CJ그룹이 유일하였으며, 이는 총수일가의 권한과 책임 측면에서 더욱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재직 건 수(17건)가 10대 그룹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절대적인 수치 뿐만 아니라 CJ그룹의 상장기업 수(8개社)를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미등기' 임원임에도 CJ(지주사)로부터 67억1천7백만원의 보수를 받아 '등기' 임원인 김흥기 대표이사의 보수보다 무려 3.3배의 보수를 받았으며, CJ제일제당으로부터 받은 보수(28억원)는 신현재 대표이사의 1.2배, CJ ENM으로부터 받은 보수(28억6천2백만원)는 허민호 대표이사의 2.4배 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경 부회장이 CJ ENM으로부터 받은 보수 29억7천6백만원은 허민호 대표이사의 2.5배로, '책임경영'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CJ그룹의 '미등기' 임원인 총수일가가 CJ그룹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총 153억5천5백만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그룹 중 총수일가의 가장 많은 '미등기' 임원 재직 건수(17건)가 발견되었지만 다수(13건)의 '미등기' 임원인 총수일가의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에서 상위 5명의 범위를 벗어나 보수 내역 확인이 불가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총수는 '미등기' 임원이나, 총수의 외숙부인 손경식 회장이 CJ(지주사)와 주력 계열회사인 CJ제일제당에서 '등기' 임원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은 비록 손경식 회장이 총수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을지라도 총수일가로서 경영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표7. 1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 미등기 총수일가의 보수 현황 (C)

그룹명	기업명	총수일가(총수 포함) ^{주1)}				전문경영인 ^{주2)}		보수배수 (총수일가/전문경영인)
		성명	직책	등기여부	보수(백만원)	성명	보수(백만원)	
CJ	CJ	이재현 ^{주3)}	회장	미등기	6,717	김홍기	2,009	3.3배
		이미경	부회장	미등기	미공개 ^{주4)}			-
		김희재	부사장	미등기	미공개 ^{주4)}			-
		정종환 ^{주5)}	부사장대우	미등기	미공개 ^{주4)}			-
	CJ제일제당	이재현 ^{주3)}	회장	미등기	2,800	신현재	2,381	1.2배
		이미경	부회장	미등기	미공개 ^{주4)}			-
		김희재	부사장	미등기	미공개 ^{주4)}			-
		이경후	부사장대우	미등기	미공개 ^{주4)}			-
	CJ ENM	이재현 ^{주3)}	회장	미등기	2,862	허민호	1,207	2.4배
		이미경	부회장	미등기	2,976			2.5배
		김희재	부사장	미등기	미공개 ^{주4)}			-
		이경후	부사장	미등기	미공개 ^{주4)}			-
	CJ대한통운	이재현 ^{주3)}	회장	미등기	미공개 ^{주4)}	박근희	2,147	-
		이미경	부회장	미등기	미공개 ^{주4)}			-
		김희재	부사장	미등기	미공개 ^{주4)}			-
	CJ CGV	이재현 ^{주3)}	회장	미등기	미공개 ^{주4)}	최병환	1,232	-
		이미경	부회장	미등기	미공개 ^{주4)}			-
	소계	17건			15,355+α			

자료: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사업보고서(2020.12)

주1) 총수일가는 총수의 친인척 중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총수의 배우자 限

주2) 총수일가, 고문 등을 제외한 등기임원 중 보수총액이 가장 높은 임원

주3) 총수 본인

주4)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현황은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을 공개하고 있어 해당 인원의 정보가 없음

주5) CJ(지주사)의 정종환 부사장대우는 이재현 회장의 사위로 위 통계에 포함

주6) 총수 및 총수일가의 보수 현황은 2020년 기준

시사점

I. '책임경영' 측면에서 총수의 '등기' 임원 등재 필요

'등기' 임원은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정관」, 「이사회 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상법 제399조에 의거하여 의사결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 연구소가 10대 그룹 총수 및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등재 현황과 보수 내역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대규모 지분투자 및 시설투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그룹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수 및 총수일가의 상당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미등기' 임원이기에 그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음에도 '등기' 임원인 전문경영인보다 월등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책임경영'을 위해
총수의 '등기' 임원 등재 필요

물론, 경영에 참여하는 유능한 총수 및 총수일가는 전문경영인에 상응하거나 상회하는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한국의 경영환경 상, 총수가 실질적으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총수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등기' 임원으로서의 등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II. 총수일가 보수 내역은 '5억 이상 상위 5인 공개 규정'에 제한 없이 공개

당 연구소가 10대 그룹의 총수 및 총수일가의 보수를 조사하는데 미공개 정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미등기' 임원의 보수 확인은 〈사업보고서〉 공시 중 '임원의 보수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장 제2절〉에 의거하여 '임원의 보수 현황'은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에서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총수일가의 보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총수일가 보수 현황 기재 목적,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개정 要

가령, 금융감독원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장 제2절〉의 내용에서 '총수일가'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은 상위 5명에 제한 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개정한다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경계하는 관점에서 더욱 완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사업보고서> 내 총수일가를 구분하는 용어 통일

당 연구소가 총수일가를 구분하고자 10대 그룹의 상장기업(106개社)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총수일가를 구분하는 것에 소극적이고 기업마다 통일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같은 기업집단(그룹) 내에서도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된 것은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예컨데,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는 故 이근희 회장을 '최대주주 본인'으로 기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최대주주의 자', 해당 기업의 임원을 '발행회사 임원'으로 기재하였다. 반면, 현대자동차의 <사업보고서>는 정몽구 회장을 '임원'으로 정의선 회장을 '임원'으로 해당 기업의 임원을 '계열회사 임원'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SK의 <사업보고서>는 최태원 회장을 '최대주주'로 최태원 회장의 배우자인 노소영씨 등 그 밖의 친인척 및 해당 기업의 임원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일괄 기재하였다.

총수일가 구분 목적,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개정 요

총수일가의 임원 등재 여부 및 그 보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정보이자, 총수일가에 대한 구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업보고서> 내 'VII. 주주에 관한 사항' 중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과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임원 및 직원 등에 현황'이다. 따라서, 해당 항목에서 '관계'를 기재할 때 총수일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동일인의 혈족 2촌, 인척 4촌, 자녀 등의 표현으로 통일된 용어와 서식을 도입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8장 제8-1-1조>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장 제9-1-1조>를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주)대신경제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특정한 투자상담, 권유, 또는 광고 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당 연구소는 본 리포트에서 제공된 내용에 관하여 정확성 또는 예측의 실현여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분쟁 등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 연구소의 동의 없이 이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